

IP카메라 보안강화 체크리스트



사업장명	소재지	점검일시/점검자
점검유형	☐ 전문업체 점검 (설치업체, 유지보수업체 등) ☐ 자체점검 (전담부서, 담당자 점검 등) ☐ 외부기관 현장점검 (지자체 등)	
종합의견	※ 신체적 노출이 예상되는 민감한 장소에 IP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네트워크 차단 또는 비밀번호 변경 등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의견 작성	

1단계 IP카메라 점검을 위한 사전 정보 확인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요	비고
1-1.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한 업체 또는 CCTV에 대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업체를 알고 있는가?	☐	☐	
1-2. 사업장 내에 CCTV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는가?	☐	☐	

조치사항

- ▶ IP카메라 점검 가능한 전문업체(설치업체, 유지보수업체) 또는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과기정통부가 IP카메라 설치업체 대상으로 발간한 “2025년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가이드”(‘KISA 보호나라(www.boho.or.kr)-알림마당-보고서/가이드’에서 확인 가능)에 따른 정밀점검 실시
- ▶ 사업장내 네트워크 구성 방법 및 네트워크 카메라 기종에 따라 다양한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과기정통부 가이드 라인에 따른 정밀점검 권장
- ▶ IP카메라 정밀점검이 가능한 전문가(설치업체, 유지보수업체, 전담부서 등)가 없거나 정밀점검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다음 단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

2단계 IP카메라 운영 현황 및 필요성 점검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요	비고
2-1. 사업장 내 설치된 CCTV 중에서 외부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한 IP카메라가 있는가? ※ CCTV와 IP카메라는 화선 구성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외관은 실질적으로 동일함 ※ 이에 본 체크리스트에서는 스마트폰 앱 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실시간 또는 저장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IP카메라를 대상으로 함(이하 같음)	☐	☐	CCTV 00대 중 IP카메라 00대
2-2. 은밀한 신체적 노출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된 CCTV 중 IP카메라가 있는가?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에는 CCTV 및 IP카메라 설치가 금지됨(단, 법령에서 정한 시설은 예외)	☐	☐	인터넷 접근 차단 IP카메라 00대

조치사항

- ▶ 외부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한 IP카메라가 있을 경우 이를 계속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경우 인터넷 접속 기능 차단
- ▶ 특히, 은밀한 신체적 노출이 예상되는 민감한 장소에는 반드시 외부 인터넷에서 접근 불가능하도록 조치(네트워크 화선/카드 분리, 저장장치 WAN 분리 등)
※ 물리적 망분리,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해 외부 인터넷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폐쇄회로를 구성할 수 있음

IP카메라 보안강화 체크리스트



3단계 사용자 계정(ID) 및 비밀번호 변경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요	비고
3-1. 모든 IP카메라와 영상저장장치의 사용자 계정(ID) 및 비밀번호를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없는 문자열로 변경하였는가? ※ IP카메라와 저장장치별로 ID/비밀번호가 각각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모두 변경	☐	☐	비밀번호 변경 IP카메라 00대, 저장장치 00대

조치사항

- ▶ 사용자 계정(ID)과 비밀번호는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전용 앱(App)이나 전용 S/W 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변경 가능. 다만, 기기별로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시 제조업체 메뉴얼 확인 또는 제조·판매업체의 고객센터 문의 필요
- ▶ admin, root, user1, user2, user3과 같이 실제 해킹 사례가 있는 사용자 계정(ID)은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야 함. 다만, ID 변경이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에는 우선 보다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향후 ID 변경이 가능한 다른 제품으로 교체 권고
※ IP카메라를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연속으로 틀릴 경우 일정시간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이 포함된 제품으로 교체 권고(알려진 ID/비밀번호를 조합하여 반복적으로 자동 로그인을 시도하는 '크리덴셜 스테핑 공격'에 대한 기본적인 차단 기능 제공)
- ▶ 비밀번호는 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 3가지 유형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의 문자열로 변경
- ▶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알 수 없어 초기화하는 경우에는 현재 설정값이나 영상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조·판매업체를 통해 확인하거나 데이터 백업 필요

4단계 기타 보안조치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요	비고
4-1. IP카메라 또는 영상저장장치에는 등록된 사용자 외 임의로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 게스트 모드 차단, 펌웨어 업데이트 등(필요시 제조·판매업체에 문의)	☐	☐	
4-2. IP카메라 접근 가능한 단말기(스마트폰, 노트북, PC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였는가? ※ 자동 로그인 비활성화, 백신 설치 및 업데이트 등	☐	☐	

조치사항

- ▶ 게스트 모드 활성화시 비인가자가 무단으로 영상에 접근할 수 있어 반드시 차단 필요
- ▶ 단말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IP카메라에 대한 통제 권한이 함께 탈취될 수 있음

